



Announcement 1

자율안전확인제도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난 3월 24일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는 중국·동남아 등으로부터 저가의 품질 낮은 공산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공산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들이 급속하게 유통되며, 신종 위해제품의 출시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안전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함으로서 소비자를 공산품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된 안전관리제도는 소비자에 대한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방법이 차등 적용된다.

〈제도 개선 전·후 안전관리체제 비교〉

기 존	개 정	
안전검사 (의무)	안전인증 (의무)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성이 중대한 품목 18개
안전검정 (임의)	자율안전확인 (임의 + 의무)	신체에 안전우해의 우려가 있는 품목 47개
품질표시 (임의)	안전품질표시 (의무)	사용시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품목 14개
-	신속조치 (신설)	

안전관리제도 중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은 품목으로서 제조자의 공장심사와 제품검사가 병행하여 실시되고,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함으로서 산업체의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18개 품목으로 최소화되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대상공산품은 47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제조 또는 수입자

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에 대한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제품은 공장 출고전에 그리고 수입제품은 세관통관 전에 안전관리가 적용된다.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정보제공으로 소비자 표시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한 14개 안전·품질표시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전에 안전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개발제품 등 현행법령에서 관리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성이 확인되면 판매금지·개선·수거·파기를 권고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포하도록 하는 신속조치제도를 신설하였다. 동 안전관리제도에서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에는 안전마크(KFS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안전마크를 확인함으로서 제품에 의한 위험으로부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입을 위한 선택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 신제타이어의 안전관리, 자율안전확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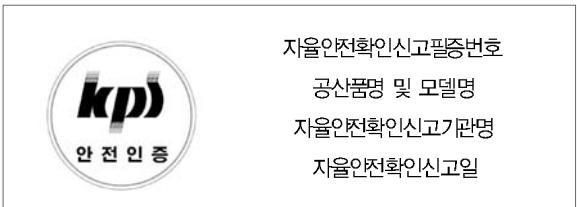
신제타이어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타이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각각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서, 기타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의 설명서, 시험기관의 해당공신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서), 그리고 시험대상타이어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 면제 또는 안전성 시험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 대신 안전확인 면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이에 대해 안전인증기관은 신고인에게 필증번호가 기재된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신고인은 동 신고필증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사는 출고전에, 수입자는 통관전에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타이어 안전확인을 위해 요구되는 시험항목은 타이어 내구성 및 고속내구성, 강도 그리고 비드이탈 시험인데, 이중 타이어 내구성 및 고속내구성 시험은 자체시험에 따른 시험성적서 및 제3자 인증으로 대체되며,

- ☞ 자체 시험 : 자율안전확인 신고 의무자가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시험검사 서비스를 구비하고 의무자 스스로가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것
- ☞ 제3자인증 : 국제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에서의 시험이 가능함을 의미

나머지 타이어 강도와 비드이탈 시험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동 테스트를 위해서는 규격수에 관계없이 용도별(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 그리고 구조별(래디얼, 바이어스)로 각각 1개의 테스트 대상 타이어가 요구되며, 확인신고서와 기타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타이어에 대한 테스트와 서류심사를 끝내고 신고인에게 교부한 신고필증을 바탕으로 신고인(국내 제조사나 수입업자)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자율안전확인표시 방법은 KPS 도안 및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를 비롯한 4 가지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신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색상은 파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자율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공신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Announcement 2

EU의 신화학물질관리(REACH)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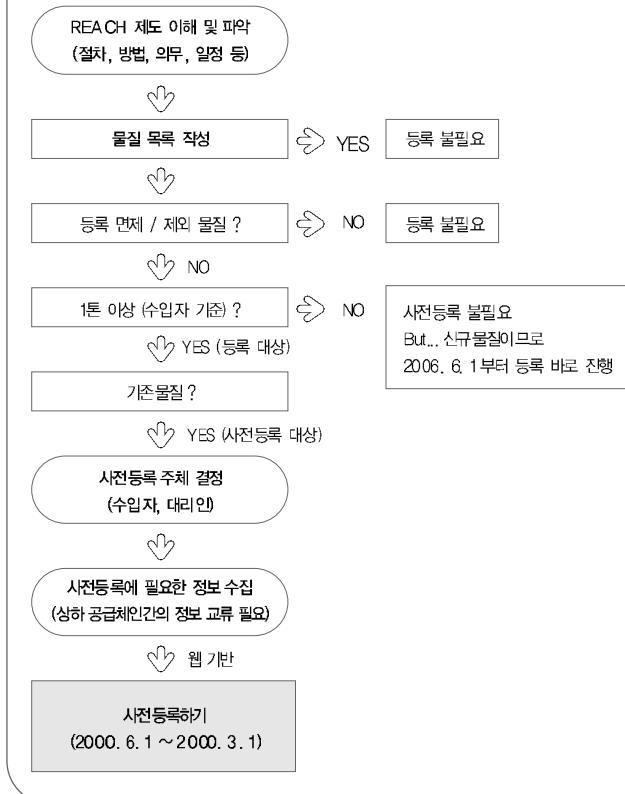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국제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로 평가되는 EU의 REACH 제도 시행이 임박하였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는 EU내 40여 개 화학물질 관련법령을 통합한 「EU의 신 화학물질 통합관리제도」로서, 03. 10월 EU집행위원회(안)이 발표된 후 3년여 간의 토론을 거친 수정안이 06.

12월 EU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채택되었고 07.6.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등록구정과 시행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동제도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해 EU와 전세계 주요국가의 산업체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제도의 핵심은 등록, 평가, 허가이다.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자체, 혼합제(Preparation) 내의 물질, 완제품(Article) 내의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물질, 그리고 고분자물질(Polymer)내의 단량체 등은 모두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렇게 등록된 물질들은 유럽화학물질청의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 후 위해성이 높다고 판정되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수출입의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100톤 이상 화학물질은 등록 후 별도의 평가를 받고 추가로 화학물질청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CMR 물질이나 *PBT 물질과 같이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제도 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등록, 평가,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만 EU내 제품 유통이 가능하다. 동 절차 중 등록은 사전등록과 본등록으로 나뉘는데, 특히 동 제도 발효 후 1년간의 유예를 거쳐 08.6.1~11.30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전등록은 누락시 등록 유예를

사전등록준비



* CMR : Carcinogen (발암성), Mutagenic (돌연변이성), Reproductive toxicity (생식독성)를 말하는 것으로, CMR 물질은 EU의 분류표시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

* PBT : Persistent (잔류성), Bioaccumulative (생물蓄积性)이 높고 독성(toxicity)도 강한 물질을 말하며, REACH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을 PBT 물질이라 한다.

반을 권리와 정보공유의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EU에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사전등록을 위해선 우선 EU 수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어떤 물질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용되는지 일일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사전 등록 후에는 본등록(제품 수출량에 따라 3년 6개월에서 최장 11년까지 유예)을 해야하며 본등록 과정에서는 국제인증기관(GLP)에서 64개 항목에 걸쳐 유해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진다. 요컨대, 동 제도는 화학물질로 인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를 기본 취지로 하고 있지만 비유럽 기업에게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사실상 EU로 수출하는 거의 모든 업체가 적용 대상이 되며 따라서 동 제도에 대한 우리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Announcement 3

재활용 고무분말 유해성 기준 제정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07.4월 재활용 제품인 고무분말 중의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표 1. 고무 분말의 유해물질 허용 기준>

(단위: mg/kg)

시험항목 종 류	중금속 기준				유해화학물질의 총량 기준	
	Pb	Cd	Hg	Cr(VI)	(1)T-VOC	(2)PAHs
고무분말	90 이하	50 이하	25 이하	25이하	50 이하	10 이하

☞ 주(1) T-VOCs는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및 크실렌(Xylene) 물질임
단, 벤젠인 경우 1mg/kg 이하이어야한다

☞ 주(2) PAHs는 방향족 고리가 여러개인 인체에 유해한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Benzo(a)pyrene, Benzo(e)pyren,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총량임
단, Benzo(a)pyrene은 국제규격에 따라 기준치 1 ppm 이하로 하여 2010. 1 월부터 적용하기로 유예